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연방법무부, 기업결합전 대기간 간 무시한 사업자에 벌금

연방법무부는 QUALCOMM Incorporated(이하 QUALCOMM) 및 Flarion Technologies Inc.(이하 Flarion)와의 합병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결합전 대기간 조건 위반을 이유로 총 180만 달러의 민사적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병안도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소송은 취하된다. 소장에 의하면, QUALCOMM과 Flarion은 지난 2005년 7월에 기업결합을 할 것을 발표한 후, QUALCOMM은 연방독점금지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전 대기간 조건을 지키지 않고 Flarion의 사업을 지배했다.

“결합기업들은 기업결합전 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독립적으로 사업활동

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Thomas O. Barnett 독점금지국장은 말하면서, “독점금지국은 이 요건을 어기고 인수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합기업들간 합의한 바에 따르면, Flarion은 일련의 기본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QUALCOMM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이렇게 합의하지 않은 내용, 즉 종업원이나 컨설턴트의 고용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Flarion은 QUALCOMM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러한 행위는 하트-스콧-로디노법(Hart-Scott-Rodino Act; 이하 HSR법) 위반이라고 독점금지국은 말했다.

HSR법은 기업결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법무부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일정한 조건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R법에서는 결합기업들이 의무적으로 30일간의 대기간을 지킬 것을 규

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 연방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면, 당사회사들은 기업결합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대기간을 두는 이유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쟁당국들이 독점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당사회사들이 이를 어기는 경우, 하루당 최대 11,000 달러의 민사적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QUALCOMM과 Flarion의 대기간 만료일은 2005년 12월 23일이었는데, 이들은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위반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벌금의 총액은 감경을 받았다. 자신들의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경쟁당국에 알렸기 때문이다.

2006. 4. 13. 연방법무부

레미콘사업자간의 카르텔을 기소

인디아나폴리스 연방대陪심이 레미

콘(ready mixed concrete) 제조회사 대표 3명을 인디아나폴리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가격담합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Beaver Materials Corp.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MA-RI-AL Corp.과 그 이사들인 Chris Beaver와 Ricky Beaver, 그리고 Builder's Concrete and Supply Co. Inc.의 부사장인 John J. Blatzheim은 상호간 뿐만 아니라 다른 레미콘 회사 대표들과 담합하여 레미콘을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 이 카르텔은 적어도 2000년 7월 초순부터 2005년 5월 25일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hris A. Beaver, Ricky J. Beaver와 John J. Blatzheim은 경쟁당국의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가 추가되었다.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기소된 것을 포함하여, 레미콘 산업에 대한 독점금지국의 지속적인 조사의 결과로 3개 회사와 8명의 개인이 총 3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번 담합은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빼앗은 행위”라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또한 그는 “연방법무부는 담합행위 뿐만 아니라 법집행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2006. 4. 13. 연방법무부

E U

EU위원회, 헝가리 정부에게 케이블TV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

EU위원회는 헝가리 정부에 대해 헝가리 미디어법상 케이블TV 서비스 규정은 EU경쟁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EU위원회의 이 같은 요청은 EC조약상의 절차에 따른 것이다. 만일 헝가리가 2개월 이내에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이 사건을 유럽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Neelie Kroes 경쟁위원은 “헝가리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케이블 사업자 간 뿐만 아니라 인프라 보유자들간의 경쟁을 해치고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시킨다”고 밝혔다.

2002년 9월의 전기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지침(2002/77/EC)은 EU연내 전체에서 경쟁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방송 전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규정들에

서 어떤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헝가리 미디어법에서는 헝가리 전국민의 1/3을 초과하여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케이블 사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EU지침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다.

2006. 4. 11. EU위원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업자에 대해 벌금 부과

EU위원회는 EU경쟁법을 위반하여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노르웨이 Tomra 그룹에 대해 2천 4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Tomra는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에서 음료수 용기 수집 용 기계의 소매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위원회는 발표했다. EU위원회는 배타적 계약시스템을 유지하고 공급량을 제한하며 상대방에 대한 충성도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을 해주는 Tomra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적어도 연기되었다고 보았다.

Neelie Kroes 경쟁위원은 “경쟁을 방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혁신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시키기 위한 전략

으로써 리베이트나 할인(discounts) 전략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는 심각한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지 않게 되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해야 하고 혁신 제품을 제공받기도 어려워지게 된다.

Tomra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 국가의 국내 시장에서 배타적 행위를 함으로써 EU경쟁법 제8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다. 위원회에서 문제 삼은 Tomra의 행위에는 (1) 기계 공급자로서의 배타적 지위를 확보하고, (2) 각각의 고객들의 태도에 따라 공급량 할당 및 주문 총액에 따른 리베이트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는 같은 업종의 독일 사업자가 Tomra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독일 사업자가 이 시장에 진입 하려고 하자, Tomra는 몇몇 대형 소매업자와 배타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 경쟁당국의 지원을 받아 Tomra 그룹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Tomra가 경쟁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Tomra가 인위적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 또는 확장하게 만들어서,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는 경쟁자들에게 의도적

으로 경고를 하는 효과를 얻었다. 벌금을 정하면서, 위원회는 불법행위의 중대성과 그 기간을 고려했다. 이에 EU위원회는 Tomra 그룹의 7개 계열사에 대해 총 2,400만 유로의 벌금을 확정했다.

2006. 3. 29. EU위원회

일제약은 비타민B5에 관한 카르텔에 대해서, BASF사 및 Hoffman-La Roche사와 함께 2,340만 유로의 제재금이 과해졌다.

BASF사 및 제일제약은 동 결정에 대해서 제1심법원에서 다투며, 제재금의 취소 또는 감액을 요구하였다.

금일 제1심법원은 BASF 및 제일제약의 주장 대부분을 각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가 제재금을 계산할 때 감액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BASF

가중사유에 의한 제재금 증액

제1심법원은 결정 및 법정(法廷) 어느 쪽에서도 유럽위원회는 BASF가 비타민C 시장에서 주도자 또는 선동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제1심법원은 BASF에 과해진 제재금의 기본액 중 동 위반에 대해서 증액된 35%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제1심법원은 더욱이 비타민D3,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에 관한 위반으로 BASF에 과해지는 제재금의 기본총액에 가중사유로서 35%가 가산되는 이유가 BASF의 선동행위 또는 주도성에 의한 것인지 혹은 양당사자에 의한 것인지의 설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가 결정중에 언급한 이유는 BASF가 이러한 위반의 주도자 또는

유럽제1심법원, 각종 비타민 카르텔 사건과 관련, BASF사에 대한 제재금을 2억 3,684만 5,000유로, 제일제약에 대한 제재금을 1,800만 유로로 감액

유럽위원회는 BASF사가 비타민 C · D3, 베타카로틴 및 카로티노이드에 관한 카르텔행위를 선동 또는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며, 또한 BASF사 및 제일제약의 협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2001년 11월 21일, 유럽위원회는 몇몇 기업이 12개의 다른 비타민 시장에서 일련의 카르텔에 참가함으로써 EU 경쟁법에 위반했음을 적발하였다. 비타민A, E, B2, B5, C, D, 베타카로틴 및 카로티노이드에 관한 위반에 대해서 유럽위원회는 8억 5,523만 달러의 제재금을 과했다. 다른 시장(비타민B1, B6, H 및 엽산)에 대해서는 제재금은 과해지지 않았다. 독일 기업 BASF사에게는 8개 분야에 대해서 2억 9,616만 유로의 제재금이 과해졌다. 일본 기업 제

선동자였다고 하는 인정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동 제재금의 증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Leniency 고시에 따른 제재금 감액
결정에서 유럽위원회는 제재금의 대상이 되는 8개의 카르텔에 있어서 BASF의 선동행위 또는 주도성 때문에 Leniency 고시의 sectionB와 C에 따라서 BASF가 제재금의 감액이라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했다. 제1심법원은 BASF는 비타민C, D3, 베타카로틴 및 카로티노이드에 관한 카르텔을 선동 또는 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BASF에 대해서 당해 감액이 주어져야 할지를 검토했다.

비타민D3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1심법원은 BASF가 유럽위원회에 대해 위반의 존재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BASF는 Leniency 고시 sectionB에 따라 제재금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타민C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유럽제1심법원은 BASF가 자주적으로 카르텔의 존재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유럽위원회에 제공했다고 해도 Roche가 그 전에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최초 제공자는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다. BASF는 따라서 Leniency 고시 sectionB에 따라 제재금의 감액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편, 베타카로틴 및 카로티노이드에 관해서는 BASF가 유럽위원회에 카르텔의 존재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최초로 제공했다. 따라서 제1심법원은, BASF는 이러한 위반에 대해 과해진 제재금의 감액을 50%에서 75%로 올려 이익을 얻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BASF에 과해진 제재금은 아래와 같이 감액된다.

- 비타민C에 관한 위반 : 1,468만 유로→1,087만 5,000유로
- 비타민D3에 관한 위반 : 756만 유로→560만 유로
- 베타카로틴에 관한 위반 : 4,320만 유로→1,600만 유로
- 카로티노이드에 관한 위반 : 4,185만 유로→1,550만 유로

전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총액은 2억 9,616만 유로에서 2억 3,684만 5,000유로로 감액된다.

제일제약

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가 제일제약의 협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고 판단하고 Leniency 고시 sectionD에 따라 제일제약에 주어진 감액이 35%에서 sectionD에서 감액의 허용한도인 50%로 인상해야한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제일제약에 과해지는 최종적인 제재금 액은 2,340만에서 1,800만 유로로 감액된다.

2006. 3. 15. 유럽사법법원 발표문

유럽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의고지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한 것을 확인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금일 제출한 2005년 12월 21일에 위원회가 채택한 이의고지서에 대한 회답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의고지서는 2004년 3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특정 의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준수하지 않은 것에 관한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가 2004년 3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공표가 요구되는 상호운용성정보의 완전하고 정확한 내역을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감시수탁자(trustee)로부터의 2개의 보고서에 따른 유럽위원회의 예비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4년 12월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당연히 유럽위원회이다.

2004년 12월 22일 유럽제1심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잠정적 조치청구를 기각한 것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2004년 3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 이후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완전하고도 정확한 내역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해왔다. 예를 들면, 2005년 6월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유럽위원회의 전문가에 의한 최초의 보고서를 송부하고, 보고서에서는 기술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매우 중대

한 의심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기술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평가할 때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유럽위원회가 지명한 저명한 영국 컴퓨터 과학전문가인 감시수탁자로부터 조언을 받았다.

금일 공표된 신문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위원회, 감시수탁자 그 누구도 12월 15일에 마이크로소프트(본사 : 미국 레드몬드)가 입수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최신판 기술문서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당해 문서는 12월 26일 유럽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것은 결정의 이행기간인 12월 15일의 11일 후이며, 이의고지서가 송부된 날의 5일 후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고문번호사는 12월 15일의 문서 중에 동 새로운 기술자료는 실제 감시수탁자가 제기한 “형식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유럽위원회가 이의고지서에 대해 검토한 것과 실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2005년 1월 25일 라이센스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모두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 2월 10일,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source code 라이센스의 초안을 수령했다. 이것은 감시수탁자에 의해 검토되어, 현재 시장테스트에 붙여졌다.

유럽위원회는 2004년 3월 결정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source code의 개시의무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Neelie Kroes 경쟁담당 위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시점에서, source code는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하고도 정확한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것에 대한 대응책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source code는 기껏해야 2004년 유럽위원회의 결정에서 완전하고도 정확한 내역의 제공을 보충할 뿐이다. 어떻게 source code 제공이 2004년 3월 결정의 준수 확보에 관련되어 있는지 이의고지서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할 책임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두에 의한 청문을 요구하였다. 청문의 조직은 청문관의 일이며, 청문은 수 주간중에 행해질 예정이다. 다른 어떠한 심사와 마찬가지로 유럽위원회는 적정한 절차가 완전하게 행해질 것을 확약한다.

구두에 의한 청문을 거쳐서 회원국 경쟁당국의 자문위원회에 의한 협의 후 유럽위원회는 규칙 1/2003호 제24조제2항에 근거,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급하여 일일 벌금(이행 강제금)을 과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04년 3월의 결정을 준수할 때 까지 계속된다.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유럽위원회는 일일 벌금(이행강제금)을 증액하는 등 한층 강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2006. 2. 15. 유럽위원회 발표문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보유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일본 독점금지법 제11조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의 의결권을 5%(보험회사의 경우는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공정취인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등은 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2002년 11월에 「독점금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의 보유 등의 인가에 대한 기준」(이하 제11조 가이드라인)을 공표함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제11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번 「규제개혁·민간 개방 추진 3개년 계획(개정)」(2005년 3월 25일 각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독점금지법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동 조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한 결과,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 의한 다른 국내 회사의 의결권의 취득 또는 보유에 대해서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 의한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

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독점금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그 총주주의 의결권의 5%(보험회사의 경우는 10%)를 넘어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은행 또는 보험회사는 사업의 성격상 또는 채권 보전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제한을 넘어 의결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한편, 사업지배력의 과도의 집중 등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6호에 규정되고 있는 특정의 경우 및 사전에 공정취인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가 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들고 있다. 가령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다른 은행 또는 보험회사와 합병을 하여 다른 국내 회사의 총주주의 의결권을 5%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합병일까지 5%를 넘는 부분의 의결권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인가를 신청하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그 보유하는 주식발행 회사의 의결권 중 5%를 넘는 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하지만, 초과액이 커서 시장에서의 매각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인가를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인가신청에 대해서는,

(1) 신청 회사에 의한 의결권 보유의 필요성, (2) 해당 의결권의 보유에 의한 인가신청 회사의 사업지배력 증대 우려의 유무 및 그 정도, (3) 주식발행 회사가 속하는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2006. 4. 27. 공정취인위원회

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반서신편 사업을 아무도 실시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누군가에게 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후의 인수자로서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일본 우정공사에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이 밖에도 독점영역이 아닌 부분에서의 원가산정방식 등에 논의도 있었다.

2006. 4. 12. 공정취인위원회

「**우정민영화법 시행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공정취인위원회는 2006년 4월 7일 우정민영화법 시행에 수반하는 우편사업과 경쟁정책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했는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영역에 대해, 일반서신편 사업에 있어서 일본에는 법적으로는 독점영역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신규 참가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진입장벽을 어디까지 내려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일본 우정 공사에도 신규 참가자에게도 부과하지 않고, 가장 염가로 보편적 서비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사업자를 입찰 등으로 결정해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

「**해운업에 있어서의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폐지**

공정취인위원회는 「해운업에 있어서의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1976년 11월 11일 공정취인위원회 고시 제17호)(이하 "해운특수지정")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했다.

해운특수지정은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54호) 제2조제7항(현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해, 선박운송사업자가 단독 또는 협정(이른바 해운동맹(해상운송법 1950년 법률 제187호) 제28조에 근거하는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카르텔)) 등에 의해 실시하는 해운 동맹 비가맹 사업자 또는 하주에 대한 각종의 부당한 행위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해운특수지정은 최근 운용

실적이 부족하고, 그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운 동맹 비가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증대와 해운 동맹이 정한 운임이 형해화되고 있는 등 외항 해운에 있어서의 업계 실태나 거래 실태를 고려해 보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규제의 간소화라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2006. 4. 12. 공정취인위원회

주식회사 레이메이 후지이에 대한 권고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레이메이 후지이(이하 레이메이 후지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제4조제1항제3호(하청 대금의 감액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권고조치 했다.

레이메이 후지이는 자사가 판매하는 문구, 사무용품 및 가정지의 상업자 상표 상품(이하 PB상품)의 제조를 하청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던 중, 자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8월 2일 무렵 자사의 문구 제조판매 사업부와 거래가 있는 하청사업자에 대해서 2004년 8월 및 9월에 납입되는 PB상품에 대한 하청대금의 액수에 일정율을 곱한 이른바 「협찬금」을 하청대금으로부터 징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하청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의 액수로부터

터 협찬금만큼을 공제했다. 그리고 2005년 1월 6일 무렵에는 전기사업부와 거래가 있는 하청사업자에 대해서 2005년 1월 및 2월에 납입되는 PB상품에 대한 하청대금의 액수에 일정율을 곱한 액을 하청대금으로부터 징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합의한 하청사업자에 대해서 그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의 액수로부터 협찬금의 액수를 역시 공제했다. 뿐만 아니라 자사의 OS·RS사업부와 거래가 있는 하청사업자가 납입하는 PB상품에 대한 하청대금의 액수에 일정율을 곱한 액을 「오더 협찬금」이라고 청하고,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사이에 매월 해당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의 액수 중에서 오더 협찬금만큼을 공제했다. 역시 다른 분문에서도 하청대금의 액수에 일정율을 곱한 액을 「판매촉진비」 또는 「물류센터 협력비」라고 청하고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사이에 매월 해당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의 액수 중 판매촉진비 또는 물류센터 협력비의 액수를 각각 공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의 액수를 줄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레이메이 후지이가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사이에 「협찬금」 등의 명목으로 하청대금을 줄이고 있던 금액(총액 2,092만 9,831엔)을 하청사업자(64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

불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감액행위가 하청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의 규정에 위반한다는 취지 및 향후 하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하청대금의 액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이사회에서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일을 거래처 하청사업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사내 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그 내용을 자사의 임원 등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했다.

2006. 4. 4. 공정취인위원회

독 일

연방카르텔청, 방송사간의 기업 결합 승인

연방카르텔청은 도산기업 학번을 주 장하면서 RTL Television GmbH(이하 RTL)가 n-tv 뉴스채널의 유일한 주주가 되고자 하는 것을 승인키로 했다. RTL은 이미 n-tv Nachrichtenfernsehen GmbH & Co.KG(이하 n-tv 뉴스채널)의 주식을 50%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CNN/Time Warner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주식 50%도 매입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은 독일내 TV 광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에서 RTL,

VOX, Super RTL 및 n-tv 채널을 지배하고 있는 RTL 그룹은 또 하나의 지배적 사업자인 ProSiebenSat.1 GruppeMedia AG와 복점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RTL 그룹이 n-tv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경우의 경쟁상황을 분석한 결과, TV 광고 시장에서의 복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n-tv와 광고계약을 맺는 현실적·잠재적 고객들은 RTL이나 다른 복점사업자에게로 가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n-tv의 재정상황이나 시장상황을 볼 때 다른 사업자들이 이 기업을 기업결합 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도산기업 항변)을 고려해 볼 때, 이번 기업결합 계획을 승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 4. 12.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연방카르텔청은 Sulo GmbH(이하 Sulo)가 Cleanaway Deutschland Holding GmbH(이하 Cleanaway)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관련 기업들은 기업결합 심사 당국을 EU위원회에서 독일 연방카르텔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비록 인수 총액이 50억 유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기업결

합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독일 시장내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Sulo는 Blackstone Group과 Apax Partner의 합작회사이다. Cleanaway의 주식은 현재 호주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Brambles company group이 소유하고 있다.

Sulo와 Cleanaway는 모두 독일내 모든 주요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몇 개의 시장들에서 경쟁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헤센주, 라인란트-팔츠주 및 작센주에서 일반폐기물, 폐지, 재활용 유리병 등의 수집 및 운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전에도 이들 시장에서는 이미 몇몇 주도적 사업자들이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경쟁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대형 폐기물 처리 회사들은 합작, 신디케이트 및 계약 등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Sulo와 Cleanaway는 시장에서 지배력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조치의 하나로서, Sulo와 Cleanaway는 곧 자산의 일부를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업결합으로 나타나는 시장지배력 강화 효과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연방카르텔청은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집중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왔다. 과점 구조가 이미 상당히 많은 폐기

물 처리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시장들에는 반경쟁적 장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Sulo와 Cleanaway 간의 기업결합에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이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그 이전보다 시장지배력이 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006. 4. 10.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새로운 감면프로그램 발표

연방카르텔청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감면프로그램(Leniency Programme)을 발표했다. 이 감면프로그램으로 인해 카르텔에서 탈퇴하기를 원하거나 연방카르텔청에 협조하기를 원하는 담합참가자들이 과징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최근 몇 년간 감면프로그램은 경쟁자들이 가격,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에 관한 불법적인 담합을 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얻은 경험을 이번 개정에 반영하여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경쟁제한방지법 제7차 개정에서 입법자는 연방카르텔청이 감면프로그램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백하게 부여했다. 카르텔 협정에는 비밀리에 공모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쟁

당국들은 카르텔을 적발하기 위해 그 참가자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자주 의지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최초로 카르텔을 신고하고 연방카르텔청으로 하여금 카르텔에 확증을 확보하게 해주는 자는 자동적으로 과징금 부과에서 면제되도록 했다. 둘째, 조사가 진행된 후에도 카르텔 참가자들이 과징금의 완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셋째, 최초의 신고자가 아니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신고한 자라도 과징금을 최고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이른바 "marker system"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신고자가 우선 카르텔에 관한 최소의 정보만을 제공한 후, 추가적인 정보를 8주 이내에 다시 제공하는 경우에 처음 정보를 제공한 때를 최초의 정보 제공시로 본다는 것이다.

2006. 3. 15. 연방카르텔청

프 랑 스

**경쟁평의회, 고급향수·화장품
브랜드를 경영하는 13개사 및
국내유통체인 3개사에 대해 총
4,620만 유로의 제재금 부과**

직권에 의한 절차를 개시한 경쟁평의회는 고급향수·화장품 브랜드를 경영하는 13개사가 소비자 소매가격에 관해서 유통업자와 반경쟁적인 협

정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경쟁평의회는 국내 유통업자 3사에도 동 위반에 대해서 제재금을 과했다.

브랜드 각사는 유통업자와 협정을 체결하고 전체 제품이 단일고정가격으로 소매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소매점간의 경쟁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과해진 제재금은 4,620만 유로로 개별로는 아래와 같다.

공급업자

- Beauté Prestige International (Jean-Paul Gaultier 및 Issey Miyake) : 81만 유로
- Chanel : 300만 유로
- Parfums Christian Dior : 220만 유로
- Comptoir nouveau de la parfumerie(Hermès) : 41만 유로
- ELCO(Clinique 및 Estée Lauder) : 160만 유로
- Parfums Givenchy : 55만 유로
- Guerlain : 170만 유로
- Kenzo Parfums : 60만 유로
- L'Oréal Produits de luxe France : 410만 유로
- Pacific Création Parfums (Lolita Lempicka) : 9만 유로
- Shiseido France : 34만 유로
- Thierry Mugler Parfums : 64만 유로
- Yves Saint-Laurent Parfums : 180만 유로

유통업자

- Marionnaud : 1,280만 유로
- Nocibé : 620만 유로
- Sephora : 940만 유로

수직적 가격협정의 설정

1997년부터 2000년에 걸쳐 고급향수·화장품 브랜드를 경영하는 상기의 회사는 특히 국내 체인점인 Marionnaud, Nocibe 및 Sephora 등의 유통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협정의 목적은 브랜드 각 제품에 관해서 소매업자간의 경쟁을 중지시키는 것이었다.

향수 또는 화장품의 각 공급업자는 유통사업자에 대해서 각 제품의 「권장소매가격」을 설정하고 관계제품의 소매가격의 인상을 계획할 목적으로 자사가 허용하는 최대할인의 지시도 하였다.

공급업자가 조직한 각 협정에는 「가격관리제도」의 도입도 보였다. 동 제도에는 실시된 가격검사(check) 및 브랜드가 부과한 가격을 적용할 것을 거절하고,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유롭게 경쟁할 것을 바라는 유통업자에 대한 상업상 보복에 있어서의 압력과 위협이 포함되었다.

심사과정에서 기록된 가격리스트의 분석 결과 가격은 대체적으로 기업간에 동의한 수준이 적용되며, 본 협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

브랜드 이미지 방어의 필요성은 자유로운 가격설정에 제한을 더하는 것

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국내 및 유럽의 판례법에 의하면 「고급」 이미지를 갖는 브랜드는 자사 제품의 소매유통의 상태에 대해서 일정한 관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들은 자사 제품이 유리하게 전시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선택적 유통으로 알려져 있으나 브랜드가 소매점을 매우 엄격하게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판례법은 브랜드가 선택한 유통업자가 자기의 이윤을 고정하는 것, 즉 소매가격을 고정하는 것을 브랜드가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유통업자가 자기 자신의 이윤 및 가격을 결정하는 자유는 최종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며, 최종소비자는 같은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다른 소매점간의 경쟁을 이용할 수 있어서 보다 유리한 가격을 얻게 된다.

금번 비난받은 브랜드는 소매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오직 자사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실제로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간의 협정에 의해 경쟁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라도 소비자의 지출을 증가시켜서 거기서 얻은 잉여를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EC조약 제81조 및 프랑스 상법전 420-1조 위반이다.

경쟁평의회는 이미 몇 가지 사례에 있어서 사실상 가격을 강요하는 「권

장」 가격을 매기는 행위를 벌하여 왔다(학교용 계산기, 원체스터 무기 및 군수품 분야, 소비자용 전기제품 분야, 디즈니 어린이용 비디오세트). 또한 경쟁평의회는 제조업자가 매긴 가격을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할인해 준 기업도 벌하였으며(Royal Canin), 유통업자가 가격에 따른 광고 캠페인을 하는 것을 방해한 고급 브랜드의 광고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도 벌하였다(Rolex, Ray Ban).

중대한 행위와 경제에 주는 손실

본 건에 관한 행위는 자유시장이 가격 매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 및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2000년 10월 13일에 공포된 유럽위원회의 수직적 제한에 관한 가이드라인 하에서의 경쟁에 대한 「하드코어 제한」을 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경쟁사업자간의 수평적 협정(카르텔)만큼 각별히 중대하지 않는데도 소비자가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소매점간의 경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대하다. 소비자 대신에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경제에 입힌 손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쟁평의회는 위반행위 기간(1997년~2000년) 및 관련시장의 크기(제재금이 과해진 브랜드 전체 8억 1,450만 유로)를 고려하였다.

2006. 3. 14. 프랑스 경쟁평의회 발표문